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정 2020. 11. 3 지침 제2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투명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방법) ①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도나 비공식적인 접외·접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격려금·축의금·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지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공휴일과 심야시간(23시를 넘어 집행한 경우) 및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제

한 업종과 구매제한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및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
- 나.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위생업종
- 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레저업종
- 라.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과 성인용품점 및 총포류 판매점

2. 구매제한 업종

- 가.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나.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다.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
- 라.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 마.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제4조(집행대상 직무활동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재조치) 본 지침 제3조(사용방법)를 위반하고 집행하였거나 집행내용이 불명확하여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집행금액에 대하여 불인정하고 이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내용의 공개) ① 기관장 업무추진비 당월 사용내역은 익월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용내역 공개 시 사용일자, 집행내역(목적), 집행구분, 집행금액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기준(제4조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나. 양주시 관할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양주시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가.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 제외)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라.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우리 공단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우리 공단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함.

다. 우리 공단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함)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 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우리 공단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임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임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임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다. 임직원 또는 소속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부서에 대한 격려 금품 지급

라. 임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임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 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바. 임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6.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양주시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7.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 재료의 구입

8. 축의·부의금품

가.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나. 지급대상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준용할 수 있다.